

의안번호	2220353
의 퇴 인	최은석 의원
회 답 일	2026. 8. 6.
추계번호	26F388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세수는 2028년 4.8억원 등 2028년에서 2032년까지 총 24억원(연평균 4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8~2032년, 소득세·법인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2조)	-4.8	-4.8	-4.8	-4.8	-4.8	-24.0	-4.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 (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)	-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·개발한 특허권 등의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1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2조 (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6년중 통과되어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추계
 - 징수기준에 따르면 2027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
- 자체 개발 특허권 등의 이전·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5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(안 제12조)
 - 최근 감면실적에는 취득금액의 5~10%를 공제하는 세액공제분(2018.12.31. 취득분까지 적용)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

- 중소·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
 - 중소·중견기업은 기술의 직접 사업화보다는 이전·대여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,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해 기술의 이전·대여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시장 확산을 도모함
 - 감면액: (기술이전) 해당 소득의 50% 세액감면
(기술대여) 해당 소득의 25% 세액감면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31년 12월 31일
- (추계방법) 기술이전·대여에 따른 세액감면 실적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여 뚜렷한 추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4.8억원

[표 2] 기술 이전·대여에 따른 세액감면 실적: 소득세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
계	6	2	6	6	4
-소득세	0.1	0.1	0.9	0.7	0.7
-법인세	6	2	5	5	3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세수는 2028년 4.8억원 등 2028년에서 2032년까지 총 24억원(연평균 4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8~2032년, 소득세·법인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2조)	-4.8	-4.8	-4.8	-4.8	-4.8	-24.0	-4.8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